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160
--------------	-----

제출년월일 : 1996.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교수공학매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지원·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원 하부조직에 "교육평가부"를 "교육자료부"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부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교육연구원의 설치 목적중 "교육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를 "교육자료 개발 등을 실시함으로써"로 함. (안 제1조)
- 교육연구원 하부조직에 "교육평가부"를 "교육자료부"로 함. (안 제3조 제1항)
- "교육평가 도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부에서 함. (안 제4조 제3호)
- 지도보급부의 업무에서 "시청각 재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2호)을 삭제하고,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험·시범 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4호)으로 함.
- 진로교육부 업무에서 "진로교육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6조 제5호)
- 교육자료부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안 제7조)
 - 각종 교육자료 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실 현장 지도에 관한 사항

□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1항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를 "교육자료 개발 등을 실시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교육평가부"를 "교육자료부"로 한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평가 도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중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험·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교육자료부) 교육자료부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자료 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교육기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4. 교육자료실 현장 지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